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지식재산기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지식재산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정부조직 개편으로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제3조(관계중앙행정기관의 범위) 중 특허청 및 기획재정부의 명칭 및 규정 호가 변경됨에 따라, 동법 시행령 제4조(위원회의 구성)에 변경된 근거 호 규정을 반영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구성이 변경되지 않도록 조치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제4조 중 “제14호의2”를 “제14호의2부터 제14호의3까지”로, “제23호”를 “제20호”로 개정함(안 제4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- 2) 입법예고(2026. 1. 00. ~ 2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 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제14호의2”를 “제14호의2부터 제14호의3까지”로, “제23호”를 “제20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위원회의 구성) 법 제7조제 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3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, 제8호부 터 제11호까지, <u>제14호의2</u> , 제15 호, 제16호, 제18호 및 <u>제23호</u> 에 규정된 기관의 장으로 한다.	제4조(위원회의 구성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14호의2부터 제</u> <u>14호의3까지</u> ----- 및 <u>제20호</u> 에 규정된 기관의 장으로 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과	
연 락 처	(042) 481 - 5429